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641호 2025. 8. 1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5-1167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71)

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8일

예 천 군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2. 제정이유

지역 청소년의 방과 후 자기주도학습, 진로탐색, 정서·건강 지원 등 전인적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형 학습지원 공간인 청소년 배움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예천군의 교육복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명시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운영 대상 및 운영계획, 주요기능 규정(안 제3조 ~ 제6조)

- 운영 대상 : 예천군 관내에 주소를 둔 청소년 및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
- 주요 기능 : 자기주도학습, 진로탐색, 체험활동 지원 등
- 군수의 운영책임 및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명시

다. 운영 지원 및 위탁운영 근거 마련(안 제7조 ~ 안 제8조)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의견제출

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2ljh1207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총무과

3) 팩스 : 054-650-608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(전화: 054-650-6199)에 문의하
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
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
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청소년 배움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이 관내 청소년에게 자기주도 학습 공간, 체험활동, 학습지원, 급·간식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“청소년 배움터”를 운영함으로써,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역량 증진을 도모하고,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청소년 배움터”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48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방과 후 또는 여가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과 성장·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천군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이용 대상) 청소년 배움터의 이용 대상은 예천군에 거주하거나 예천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. 다만, 필요 시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.

제4조(군수의 책무)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청소년 배움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영계획 수립)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필요시 예천군 교육발전특구 시행계획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.

제6조(주요 기능) 청소년 배움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기주도 학습 및 학력 진단 지원
2. 온라인 학습 및 특기 적성 훈련 환경 제공
3. 진로 탐색 및 체험활동 운영
4. 자치활동 및 소통 공간 제공
5. 학부모 대상 정보 제공 및 상담
6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성장 지원 활동

제7조(운영 지원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청소년 배움터 운영 지원
2.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운영비
3.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
4. 운영 종사자 교육·훈련비
5. 기타 청소년 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비용

제8조(위탁운영)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종사자의 권익증진)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 운영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문단 구성) 군수는 청소년 배움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, 필요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